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98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이춘석 · 임미애 · 안호영
윤준병 · 임호선 · 박희승
양부남 · 한민수 · 김준혁
이연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

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호까지에”를 “제33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학생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
· 편집·유포·상영 또는 계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